

부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58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587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32450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민석, 정유진, 김재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9. 1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3245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345,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20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억 1,290만 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대여하면서 이율 연 247.6% 내지 497.3%로 정하여 65회 내지 78회에 걸쳐 매일 대여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부터 2019. 2. 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9,872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를 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의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면제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 또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경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및 원본에 총당하고서도 남은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여한 금액은 합계 4억 1,290만 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합계 1억 9,872만 원으로 이는 위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5차례 가량 대환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의 대여금액 4억 1,290만 원 중 일부 금액은 중복으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대여금이 대환에 해당하여 중복 계상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실제 대여금액이 2억 2,655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2020. 5. 2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변제금액 1억 9,872만 원은 여전히 위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3,0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원금 2억 2,655만 원과 원고가 변제한 1억 9,872만 원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대여금액 및 변제금액에 관한 계산을 거쳐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조장현, 판사 엄지아